

붙임

2026년 국방연구개발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공고
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오니,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9월 14일

국 방 부 장 관

I. 사업개요

□ 대상과제

과제번호	과 제 명	사업기간	예산
26-국방연구개발-01	K55A1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	협약일부터 3년	67.42 억원

- 공고기간 : 2026년 9월 14일(월) ~ 10월 14일(수)
- 과제제안요구서(RFP) : '별지 1.' 참조

II. 자격요건

□ 신청자격

주관연구개발기관(이하 '주관기관')
• 국공립 연구기관 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•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•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•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

- ※ 공동연구개발기관(이하 '공동기관'), 위탁연구개발기관(이하 '위탁기관') 신청 자격은 주관기관과 동일
- ※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에는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, 영리기관은 상기에 따른 '기업부설연구소'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- ※ 기업부설연구소, 민간생산기술연구소,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 기업이 반드시 과제에 참여해야 함
- ※ 국방과학기술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사업 주관은 영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□ 참여제한

- 주관기관, 공동기관, 주관기관의 장, 공동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부도, 법정관리인 기업
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(세무서/홈텍스 발행)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
- 최근 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기업

□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문의처 및 설명회

- 문의처
 - leedonghun@krit.re.kr 또는 02-961-1527
- 설명회 일정
 - 일시 : '26. 9. 21.(월) 13:30~16:00
 - 장소 :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2층 스페이스웨어 서울역 센터 사파이어홀



- 행정사항
 - 참석자 인적사항(이름/생년월일/소속/직급/연락처)을 '26. 9. 17.(목) 16:00 까지 문의처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으로 신청
 - 여건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, 당일 방문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
 -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 공지 예정

Ⅲ. 신청절차

□ 제출서류

① 연구개발계획서 9부 ('별지 3.' 참조)

* 연구개발계획서 원본 1부, 사본 8부 제출(별지 3.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'별첨 자료'는 원본에만 첨부하여 제출)

②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("별지 4." 참조)

* 주관/공동/위탁 연구개발기관 각 1부

③ 관련 증빙자료

-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
-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,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각 1부
- 기업 부설연구소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
- 영리기관인 경우, 최근 2년간 재무제표, 신용등급 증명 서류(기업신용등급 증명서 등) 각 1부

* 재무제표 제출이 제한될 경우(법인 설립 2년 이내 등)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

- 비영리기관인 경우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설립허가증 1부

※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를 제출

※ 연구개발계획서 작성·제출 시 주의 사항

-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“별지 3.” 양식(A4 규격용지) 활용
- 양식을 기준으로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(내용이 없을 시 '해당 무' 표시)
- 양식을 준수(앞표지 위치 변경, 배경이미지 삽입, 업체 CI 삽입, 색상 변경 등 금지)하여 작성하며, 부득이한 수정 필요 시 담당자 문의
- 첨부/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
- 그림, 도표 등을 삽입 시 출처를 명시
-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요망(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양식에 포함된 항목 외 기타 추가 제출서류는 제본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)

□ 제출방법

- 서류제출 :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담당부서에 우편 접수 또는 직접 제출
 - 서류접수 기한 : '26. 10. 14.(수) 16:00
 - * 우편 접수 경우 담당자 접수일 기준이며, 담당자 사전 통보 필수
 - 주소 :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
(전력지원체계사업팀)
- 서류접수 시 전산등록(사본 제출) 병행
 - 전산등록처 :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(PMS) 등록
 - 전산등록 기한 : '26. 10. 14.(수) 16:00
 - 전산등록 절차 :
 -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pms.krit.re.kr>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전력지원(진행 중인 공고) 메뉴 선택 →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
 - * 등록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, 마감 당일에는 전산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~3일 전 등록 완료를 권장
 - *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, 연구책임자에 대한 등록 및 승인에 1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
 - * 전산등록 중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담당자(055-751-7664, 7688)에게 문의

IV.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

□ 평가절차

서류접수	▶	주관기관 선정평가	▶	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	▶	주관기관 확정	▶	협약 체결
‘26.10.14		‘26.11월		‘26.11월~12월 중		‘26.12월 중		‘26.12월 중

※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과제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

※ 주관기관 선정평가는 「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」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」을 따르며, 세부일정은 과제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	배점
연구목표 및 내용	1. 연구목표의 적절성 - 연구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- RFP와 연구개발목표의 일치성 - 연구목표의 성공가능성	25
	2. 연구내용의 적절성 - 연구내용의 적절성 - 최종 산출물의 적절성 -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	10
	3.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-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적절성 - 연구과제 추진전략의 창의성 - 연구과제 추진체계의 적절성	10
활용성	4.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- 활용 분야의 적절성 및 활용 가능성 -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	10
	5.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- 시장동향 및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- 사업화 계획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	5
6.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-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능력 -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연구개발 능력		25
7. 수행계획의 충실성 -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타당성 - 연구시설·장비 구축의 타당성		5
8. 연구결과 평가계획의 적절성 - 평가항목 및 성능지표의 적절성 - 평가방법의 적절성		10
계 (100점 만점)		100

V. 사업추진 관련사항

□ 일반사항

- 단위 공모과제로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가능
 - －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
 - － 주관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
 - － 공동기관은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
 - － 영리기관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.

□ 연구개발비 구성

-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(국방부)가 전액 출연하는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연구개발비는 전액 출연금(현금)으로 구성
-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 용도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 2를 따르며 세부내용은 「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을 적용
 - ※ 연구개발비에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특수 성능 시험비, 인건비, 개발·운용시험평가 기술용역 계약비 등이 포함

□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

-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은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라 국가가 소유
- 주관기관, 공동기관의 장은 유형적 및 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,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

□ 관련 법령 및 규정

-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('24. 7. 10.), 시행령('24. 7. 1.) 및 시행규칙('21. 3. 30.)
-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('26. 7. 1.)
-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('24. 8. 6.)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'26. 5. 6.)
 - ※ 위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 가능

Ⅵ. 기타사항

-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변경(취소)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고가의 장비(1억원 이상) 반영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
-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,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에 있음
-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관리 업무가 추진되며, 세부절차는 별도 통보할 예정임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담당자 연락처

과 제 명	연 락 처
(육군) K55A1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	leedonghun@krit.re.kr, 02-961-1527

별지 1. K55A1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과제제안요구서(RFP)

별지 2. '연구개발계획서' 양식

별지 3. '청렴계약 이행 서약서' 양식